

미국 한·미 FTA 이행법 관련 설명자료

(1) 한·미 FTA와 미 연방법·주법과의 관계

① 한·미 FTA와 미 연방법과의 관계

- 한·미 FTA 규정이 미 연방법과 불일치할 경우, 한·미 FTA의 관련 규정과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이 없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a))은 한·미 FTA 협정과 미국 국내법간의 법적인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 우리와 달리, 미국은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됨.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 (SAA 관련 문구)

Section 102(a) clarifies tha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effect under domestic law if it is inconsistent with federal law, including provisions of federal law enacted or amended by the bill. Section 102(a) will not prevent implementation of federal statut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where permissible under the terms of such statutes. Rather, the section reflects the Congressional view that necessary changes in federal statutes should be specifically enacted rather than provided for in a blanket preemption of federal statutes by the Agreement.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Those include both regulations resulting from statutory changes in the bill itself and changes in laws, regulations, rules, and order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a change in the underlying U.S. statute.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resident's continuing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carry out U.S. law and agreements. As experience under the Agreement is gained over time, other or different administrative actions may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o implement the Agreement.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or, if a change in regulation is required, follow normal agency procedures for amending regulations.

102(a)조는, 한·미 FTA 이행법에 의해 제정되거나 변경된 연방법의 조항을 포함하여, 미 연방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한·미 FTA 협정문의 어떠한 조항도 미 국내법하에서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102(a)조는 연방법의 조건에 따라 허용가능한 경우 한·미 FTA와 합치하도록 연방법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조항은 연방법을 한·미 FTA에 따라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연방법상 필요한 변경은 특정하여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미국의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을 이행법에 포함하고 또한 모든 행정조치를 본 행정조치계획에서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이에에는 이행법 자체에서의 법률 변경에서 비롯되는 규정과 더불어 근간이 되는 미국법의 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행될 수 있는 법, 규정, 규칙, 명령 등의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 법과 협정을 준수할 지속적인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협정상의 경험이 축적함에 따라, 다른 행정조치가 협정 이행을 위한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취하여 질 수 있다.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정 조치를 구하거나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위한 정상적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다.

② 한·미 FTA와 주법과의 관계

- 주법이 한·미 FTA와 불일치할 경우, 미 연방정부가 해당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을 무효로 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인이나 상황에 대해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b))은 주법이 한·미 FTA 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주법의 연방법 위배여부 및 무효 판단은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을 통해야 한다는 미 헌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문구임.
- 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 헌법(제6조제2단)상 연방법 우위의 원칙(the supreme Law of the Land)에 따라 당연히 개별 주법을 통제하는 상위의 지위에 있게 됨.
- 행정조치계획(SAA)은 한·미 FT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수준의 법과 규정과 주 및 지방의 법과 규정도 통제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SAA 관련 문구)

The Agreement's rules generally cover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ose at the federal level. There are a number of exceptions to, or limitations on, this general rule, however,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government procurement, labor, environment,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The Agreement does not automatically "preempt" or invalidate state laws that do not conform to the Agreement's rules, even if a dispute settlement panel were to find a state measu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is free under the Agreement to determine how it will conform with the Agreement's rules at the federal and non-federal level,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carrying out U.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s they apply to states, through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of state-feder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한·미 FT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수준의 법과 규정과 주 및 지방의 법과 규정도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상당한 예외와 제약이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자, 그리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금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한·미 FTA는 비록 분쟁해결패널이 주의 조치가 협정에 불일치한다는 판정을 할 수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주법을 사전 무력화하거나 무효시키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 또는 비연방의 수준에서 협정의 규정에 합치할 방식을 동 협정하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상 미국의 의무가 각 주들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연방-주 간의 가능한 최대한 수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한다.

(2) 우리 투자자의 미국 법원 제소가 불가하다는 주장

-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c))은 앞서 설명한 미국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법체계상 당연한 규정임.
- 미국 국내법 체계상 한·미 FTA는 그 자체로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않고(즉, 이원론적 체계에서는 국제법 자체가 자기집행력이 없음)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와 같은 사인은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하여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는 관련 미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 법적 구제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음.
- 아울러, 한·미 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계획(SAA)은 미국내 한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FTA상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에서는 한·미 FTA상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11.18조 및 부속서 11-마에 따라,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단 한국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추후 ISD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되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단하고 ISD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행법안의 동 조항은 WTO협정을 포함하여 미국이 체결한 과거 FTA 이행법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표준 문안임.

※ (SAA 관련 문구)

Section 102(c) of the implementing bill precludes any private right of action or remedy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a private par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 private party thus could not sue (or defend a suit against) the United States, a state, or a private party on grounds of consistency (or inconsistency)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 also precludes a private right of action attempting to require, preclude, or modify federal or state action on grounds such as an allegation that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xercise discretionary authority or general "public interest" authority under other provisions of law in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states, section 102(c) represents a determination by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that private lawsuits are not an appropriate means for ensuring state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Suits of this nature may interfere with the Administration's conduct of trade and foreign relations and with suitable resolution of disagreements or disputes under the Agreement.

이행법안 102(c)절은 사인이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사인에 대하여 소송 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배제한다. 그러므로 사인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사인에 대하여 협정의 합치성 또는 불합치성을 이유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규정은 정부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다른 법규정상의 일반 "공익적" 권한 또는 재량적 권한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방 또는 주의 조치를 요구, 배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개인의 소권을 배제한다.

주에 대하여, 102(c)절은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주의 합치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은 사적 소송이 아니라는 의회와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성격의 소송은 행정부의 무역과 외교관계의 수행, 그리고 한·미 FTA 협정상의 적절한 분쟁 해결을 저촉할 수 있다.

(3) 우리 핵심 이익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

① 개성공단

- 한·미 FTA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에 관해 협정 발효 후 양국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 도입된 바, 이는 협정상 합의사항으로 양국 모두를 구속함.
 - 향후 북한 핵문제 진전 및 북미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동 위원회를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논의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necessary or appropriate) 법 제·개정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협정 내용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양국 정부간 협의채널인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대하여 한·미 FTA 이행법안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 FTA의 여타 위원회도 동 법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행정조치계획(SAA)에서 언급되어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내용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현행 대북제재가 바로 변경되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내용에 불과함.

② 반덤핑

- 한·미 FTA에서 합의된 대로 기존 미국 반덤핑 관련 절차에 추가하여 절차적 개선을 도모한 부분은 미측의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집행 가능한 것이므로 미측의 이행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행정조치계획(SAA)에 아래와 같이 미국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

- 행정조치계획(SAA, 제10장 관련 행정조치사항)은 “미 상무부가 협정규정 대로 홍보 및 협의 의무를 제공할 것이며, 아울러 약속(undertakings) 요청 관련 정보 제공 및 협의 기회 제공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
 - 상기 행정조치계획(SAA) 규정은 미국이 여타국가와 체결한 FTA에는 없는 것으로 한·미 FTA상의 반덤핑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이행의무를 기술한 것임.
- 한·미 FTA에 따른 사전 통지 및 협의절차를 통하여 우리는 미측의 반덤핑 절차개시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 조사 절차진행을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③ 전문직 비자쿼터

- 한·미 FTA 협상시에는 미국내 이민정책의 민감성으로 인해 우리 협상단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 미국은 2008.11월부터 우리 국민의 상용·관광 목적 90일 이내 체류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 2010.12월 추가협상시에는 우리 대미진출 기업의 현지주재원에 대한 비자(L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1년 또는 3년 → 5년)에 대해서도 합의함.
- 한·미 FTA 서명 이후 정부는 우리측 인사의 미의회 의원 및 관계 인사 접촉, 미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 계기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 조야에 우리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음.
 - ※ 2008.4.16,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Faleomavaega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전문직 비자쿼터(E-4)를 연 2만개 별도 할당하는 요지의 법안(HR5817)을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4.28 관련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추가 논의 없이 제110대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미 행정부 및 의회를 별도로 접촉하여 전문직 비자쿼터의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 ㉠